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5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4년 2월 5일
제 출 자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- 연수원 신규 건립을 중단하고 대천임해교육원 시설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되고
-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시의회(교육위 및 예결위) 검토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및 기금명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명을 ‘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’에서 ‘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’로,
- 기금명을 ‘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’에서 ‘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’으로 함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[별첨 7]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[별첨 2])

다. 협의: 감사관, 예산담당관,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협의 완료

라. 기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[별첨 1]

2) 입법예고(2023. 12. 21. ~ 2024. 1. 11.) 결과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[별첨 3]

3) 교육규제심사: 해당없음

4) 부패영향평가: [별첨 4]

5) 성별영향평가: [별첨 5]

6) 학생인권영향평가: [별첨 6]

【별첨 1】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신청사 및 연수원”을 “신청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”를 “신청사 건립에”로, “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”을 “신청사 건립 기금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신청사 및 연수원”을 “신청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<u>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</u>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교육청 <u>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</u>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<u>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</u>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p> <p>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<u>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</u>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신청사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금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<u>신청사 건립</u> ----- ----- ----- <u>신청사 건립 기금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신청사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【별첨 2】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개정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연수원 건립 중단 결정에 따른 조례 및 기금명 변경(※'연수원 건립' 삭제)으로 비용 추계 해당 없음

4. 작성자

- 청사이전추진단(청사이전기획팀) 행정6급 김종훈(T: 2282-8502)

【별첨 3】

[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」 제14조 별지 제5호서식]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제14조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	의 견 없 음	

【별첨 4】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자치법규명	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안		
평가담당	감사관	장학사	천주영
입안주관부서	청사이전추진단	통보일	2023. 12. 21.
관련조문	검토결과		조치사항
안 전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동 개정(안)은 서울시교육청 정책 결정에 따른 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이에 따른 조례 및 기금명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- 따라서, 동 개정(안)은 정책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가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		“원안동의”

【별첨 5-1】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23A서울교육043									
정책명	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						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						
	부서명	청사이전추진단								
	담당자명	김종훈	전화번호 02-2282-8502							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3년 12월 26일									
성별영향평가 내용 (청사이전추진단)	■ 성별영향평가 항목 - 3-1. 성별 균형 참여							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							
	1. 제·개정 내용에 대하여 개선사항 없음 2. 현 제·개정 주요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함									
	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구분</th><th>해당 내용 (제·개정 법령안)</th><th>개선안 (법령 수정안)</th><th>검토사유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1</td><td>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--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</td><td>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--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<u>하되, 민간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</u></td><td>성별 균형 참여 고려</td></tr></tbody></table>	구분	해당 내용 (제·개정 법령안)	개선안 (법령 수정안)	검토사유	1	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--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	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--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<u>하되, 민간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</u>	성별 균형 참여 고려	
구분	해당 내용 (제·개정 법령안)	개선안 (법령 수정안)	검토사유							
1	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--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	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--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<u>하되, 민간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</u>	성별 균형 참여 고려							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2024년 1월 17일 까지									
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>2024년 01월 03일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</p> <p>(담당자/연락번호 : 박정원/02-3999-546)</p> <p>청사이전추진단장 귀하</p>										

【별첨 5-2】

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

관리번호	2023A서울교육043			
정책명	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영 조례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청사이전추진단		
	담당자명	김종훈	전화번호	02-2282-8502

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

1	<p>1. 제·개정 내용에 대하여 개선사항 없음 2. 현 제·개정 주요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해당 내용 (제·개정 법령안)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개선안 (법령 수정안)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검토 사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--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--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되, 민간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성 별 균 형 참 여 고 려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해당 내용 (제·개정 법령안)	개선안 (법령 수정안)	검토 사유	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--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	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--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되, 민간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	성 별 균 형 참 여 고 려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수용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불수용	<p>○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구성·운영 중으로 개선의견 반영 불필요 -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총4명으로 남여 각2명으로 구성되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음</p> <p>○ 다만, 향후 조례 개정 시 개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</p>
해당 내용 (제·개정 법령안)	개선안 (법령 수정안)	검토 사유							
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--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	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--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되, 민간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	성 별 균 형 참 여 고 려							

2024년 01월 05일

청사이전추진단

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

【별첨 6】

**자치법규 · 단위사업
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**

자치법규 (단위사업)	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(일부개정)					
담당부서	청사이전추진단	담당자	직급	주무관	성명	김종훈 (02-2282-8502)
평가담당	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	위원장 마한얼				
해당조항	검토의견					검토결과
제명, 제1조, 제2조, 제5조제1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조례 개정안은 연수원 신규 건립을 중단하고, 대천임해교육원 시설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 및 기금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. - 본 규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. 					원안 승인

【별첨 7】

관련법규

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

[시행 2023. 10. 5.] [서울특별시조례 제8873호, 2023. 10. 5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0.12.31]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(이하 "교육비특별회계"라 한다)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
2.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<개정 2016.12.29.>
3. 기금의 운용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

1.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
2. 설계비 및 감리비
3.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

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3.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<개정 2023.1.12.>

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개정 2023.1.12.>
 2. 공무원 위원은 부교육감, 교육행정국장, 총무과장, 예산담당관, 청사이전추진단장으로 한다.<개정 2023.1.12., 2023.10.5.>
 3. 민간위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<개정 2023.1.12.>
- 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<신설 2023.1.12.>

- 나. 기금의 조성·운용·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<신설 2023.1.12.>
 다. 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<신설 2023.1.12.>
 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신설 2023.1.12.>
-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③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.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
 2. 질병,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개정 2023.10.5.>

- 제7조(심의위원회 운영)**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8조(위원의 제척·회피)**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1.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
 2.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통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
-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.

- 제9조(기금의 운용·관리)**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- ② 기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」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 관리한다.

- 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)**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.
1. 기금운용관 : 교육행정국장
 2. 기금출납원 :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<개정 2023.10.5.>
-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)**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8873호,2023.10.5.>(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